



#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05006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대양하이센터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T. 02-3412-3733 / E. sportsmed@sportsmed.or.kr

문서번호: 대스의 제 2023 - 045호

시행일자: 2023. 12. 5.

발 신: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수 신: 스포츠 관련 협회 및 기관

제 목: 대한스포츠의학회 팀닥터 명칭 사용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스포츠 의학의 전문적인 발전, 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스포츠 손상과 예방을 위한 팀닥터 인력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3. 최근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인력의 '팀닥터' 명칭 사용은 업무 수행 범위 혼동, 국민 건강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본 학회에서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팀닥터'라는 명칭은 의사에게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는 "... 제27조 제2항... 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팀닥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들에게 팀닥터라고 호칭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팀닥터 명칭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시정 조치를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대한스포츠의학회

법제윤리위원장  
박양희

장

박훈기  
박훈기

